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56

발의연월일: 2021. 6. 11.

발 의 자:정필모·강선우·김경만

김성주 · 김승원 · 김원이

김정호 · 김주영 · 노웅래

송옥주 • 윤건영 • 윤준병

이수진(비) · 임호선 · 정일영

주철현 • 황운하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보고서를 정기국회 때 업무 보고로 대체하는 등 현행법의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국회가 특구 추진 현황 자료를 정기회 개회 시점 이전에 제출받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법률 제 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를 "매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해당 연도의 보고서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하는 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과학기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	
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u>시·</u>	<u>매년</u>
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정기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작성하
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	고, 해당 연도의 보고서는 다음
출하여야 한다.	연도 6월 30일까지
	<u>.</u>